

가스보일러 시공시 하자담보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가스보일러 하자담보기간:1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도시가스공급규정 관련조항

● 서울시 공급규정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기기를 설치(교체를 포함)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 경기도 공급규정

제15조(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시행 규칙 제20조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를 교체한 종전의 수요자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가스보일러 등(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한 자가 관말연결공사를 시행코자할 경우 제1항의 시공기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하자의 행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의행보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

가.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6호)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됨.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가입)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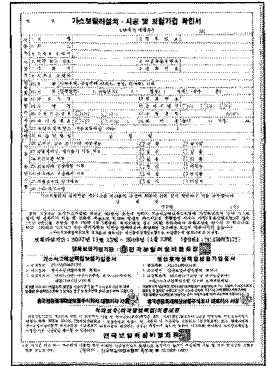
1. - 생략
2. - 생략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 운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자가 운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함.(별표11)

※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별표 17의2)



나. 보험약관

◆ 기본보상한도 : 대인배상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3억원 범위내 / 부상1인당 1천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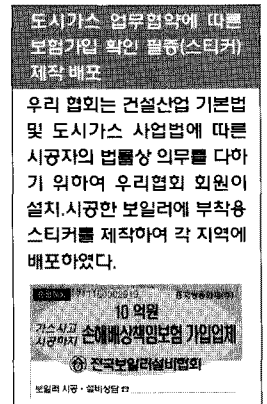
▶ 보험기간 : 1년

▶ 보험기간 연장 :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만료일로부터 (12개월 연장)

(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제외 됨)

▶ 특별약관 :

- 가스시설시공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가능.
- 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 인증 스티커 크기변경 알림

지난 9.19(금) 개최한 2008년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스보일러시설 안전점검 및 동 사고예방대책 추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원사 및 시공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시 동 스티커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 스티커크기(15mm X 15mm)가 작아 식별이 곤란하여 크기 확대 또는 여러 장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15mm X 15mm	30mm X 30mm	공사 성능인증업무지침 개정 (개정일: 2008. 11. 03)